



제 426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여성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 실시근거 명시 >
■ 서삼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224호)

2025. 6.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 용 훈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 의견	2
1.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특수건강검진 실시근거 명시	2
가. 관계 부처 의견	3
1) 농림축산식품부	3
2) 기획재정부	3
3) 고용노동부	3
나. 제21대국회 논의경과	4
다. 검토의견	4
1) 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제도 현황	4
2) 여성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 명확화 필요성 검토	8
[참고자료]	1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서삼석의원 등 11인
2. 발 의 일 : 2025. 3. 21
3. 회 부 일 : 2025. 3. 2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모성권 보장과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건강관리 지원규정을 두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주기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하여 이들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 예방과 치료를 돕고 있음.

그런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로자의 경우 건강검진을 일반건강진단과 특수건강진단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법에도 이를 반영하여 여성농어업인의 건강검진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농어업인을 위하여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일반건강검진과 유해인자에 노출된 업무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건강검진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여성농어업인의 건강권을 강화하고 나아가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신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제1항).

Ⅲ. 검토의견

1.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특수건강검진 실시근거 명시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은 여성농어업인의 건강검진을 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일반건강검진과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에게 실시하는 특수건강검진으로 구분하여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제1항).

현행	개정안
제11조의3(여성농어업인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시행)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권 보장과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여성농어업인 <u>건강검진</u> 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의3(여성농어업인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시행) ① ----- ----- ----- ----- <u>건강검진</u> 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일반건강검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에게 실시하는 특수건강검진으로 구분하여-----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③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시기·항목,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	개정안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부터 시행한다.

가. 관계 부처 의견

1) 농림축산식품부

여성농업인에 대한 건강검진 제도를 “일반건강검진”과 “특수건강검진”으로 구분하는 것에 동의함. 다만, 명확한 표현을 위하여 문구 수정이 필요함.

2) 기획재정부

여성농업인에 대한 특수건강검진 제도는 현행법에 따라 지원되고 있어 개정 실익이 없으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특수건강검진은 사업주의 의무인데, 국가는 여성농업인의 사업주로 보기 어려우므로 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임.

3) 고용노동부

개정안에 대해 별다른 이견 없음.

나. 제21대 국회 논의경과

제21대 국회에서 동 개정안과 같은 내용의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 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제2124260호)이 지난 제21대국회에서 발의되고, 우리 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 및 소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2023. 11. 23.), 이후 논의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음.

다. 검토의견

1) 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제도 현황

국제노동기구(ILO)는 농업을 광업·건설업과 함께 3대 위험산업으로 분류하고 있고, 국내 농업인은 비농업인에 비해 의료비용 부담이 크며¹⁾ 산업재해율²⁾도 약 1.2배³⁾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즉, 농업인이 비농업인에 비해 대부분의 질환에서 의료비용 및 본인 부담금이 높고, 그 중에서도 종양(1.23배), 호흡계통 질환(1.21배), 손상 및 중독 등(1.2배) 분야에서 높게 나타남.

특히, 여성농업인(88만명)의 업무상 질병유병률은 7.1%로 남성농업인(89만명) 보다 1.5배 가량 높은 실정임.

1) 「농업인과 비농업인의 질병 유병률 비교(건강보험공단 자료 분석결과)」(농촌진흥청, 2024. 12.).

2) 산업재해율: 산재보험적용근로자수 100명당 발생하는 재해자수의 비율(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분석」)
-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

3) 「제2차(’25~’29)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농림축산식품부, 2025. 2.)

또한, 어업인에 대해서는, 관절염·요통 등 근골격계 질환⁴⁾을 겪는 경우가 여성어업인(82.6%)이 남성어업인(69.4%)에 비해 높은 상황임.⁵⁾

그러나, 약 177만명의 농업인에 비해 어업인은 약 7만명으로, 규모 차이 등으로 관련 연구가 농업인 위주로 이루어지는바, 이하에서는 농업인을 중심으로 검토함.

[농업인의 업무상질병 유병률 현황]

구분	유병률						2024년	
	2014년	2016년	2018년	2020년	2022년	2024년	농업인 수	업무상질병자
총계	5.2%	5.1%	4.8%	5.0%	5.3%	5.8%	1,777,900명	103,463명
남성	4.1%	4.4%	4.0%	4.3%	4.5%	4.6%	893,111명	40,916명
여성	6.5%	5.8%	5.6%	5.8%	6.3%	7.1%	884,789명	62,548명

※자료: 농촌진흥청, 농업인의 업무상 질병 및 손상조사(국가승인통계 143003호)

이러한 여성농업인의 높은 유병률은 농산물 수확·세척·포장 과정에서 농약 잔류물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쪼그려 앉거나 팔·손목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작업이 많아 근골격계 부담이 더 크기 때문으로 분석됨.⁶⁾

현재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건강검진제도는 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는 일반건강검진과 ②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가 실시하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으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음.

4) ‘근골격계 질환’이란 무리한 힘의 사용,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자세,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접촉, 진동 및 온도 등의 요인으로 인해 근육과 신경, 힘줄, 인대, 관절 등의 조직이 손상되어 신체에 나타나는 건강장해를 총칭함(안전보건공단, 근골격계질환예방사업 소개)

5) 「어업인, 근골격계 질환과 미끄러짐 사고 가장 많이 겪어」(해양수산부 보도자료, 2024. 4.).

6) 「한국 농업인의 업무상 질병 유병률 추정 및 특성에 관한 연구」(박진우 외, 2023. 11.)

그 밖에 여성농업인도 근로자로 인정되고, 특정 유해인자⁷⁾에 노출되면 「산업안전보건법」 상 특수건강진단 적용 대상에 해당될 수 있으나, 이에 해당하는 농업인은 0.3%(2023년 6,092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반건강검진은 ① 직장가입자, ② 지역세대주, ③ 20세 이상 지역세대원 등이 2년마다(비사무직 직장가입자는 매년) 검진받을 수 있는 제도임. 이 제도는 국민들의 발병률이 높은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제도]

구 분	일반건강검진
실 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목 적	국민에 대한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대상자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20세 이상 지역세대원과 피부양자 등
검진주기	2년마다 (비사무직 직장가입자는 매년)
검진항목	신체계측, 시력·청력, 혈압, 흉부방사선, 혈액검사, 요검사, 구강검진 (공통 검사항목 기준)
비용부담	공단 전액 부담(의료급여 수급자는 국가 및 지자체)
법령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 ⁹⁾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웹사이트, 일반건강검진 제도소개 재구성

그러나, 일반건강검진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특성상, 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직업성 질환을 발견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

7) 석면, 수은, 크롬, 카드뮴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180종 유해인자

8) 「산업안전보건법」 상 특수건강진단 농업인: 6,092인(2023년 기준,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2025.6.16.)
*농업인 전체 약 177만명(2024년)

9)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건강검진) ① 공단은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 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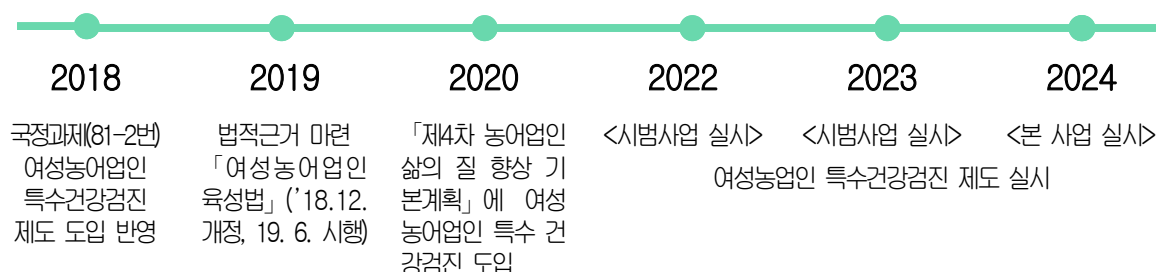
②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종류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건강검진: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2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20세 이상인 피부양자

구체적으로, 농약중독은 신경계·간 등에 서서히 영향을 미쳐 일반검사로 조기발견이 어렵고, 농작업 특성상 무릎·허리에 생기는 근골격계 질환과 분진으로 인한 폐활량 영향 등은 검진이 어려운 상황임.¹⁰⁾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2022년부터 여성농업인 특화질환의 조기발견을 위한 특수건강검진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현재는 전국을 대상으로 확대하였음.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연혁]



※ 자료: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 시행지침」(농림축산식품부, ’25.1.)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제도]

구분	내용
실시	농림축산식품부 및 지방자치단체
목적	여성농업인 직업 질환 검진
대상자	51~70세 여성농업인
검진 주기	2년 마다
검진 항목	농약중독, 근골격계 질환, 골절 위험도, 심혈관계질환, 폐활량검사
비용 부담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자료: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II-1)」(농림축산식품부, ’25.1.)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실시 현황]

연도	예산(백만원)	검진대상인원(명)	검진지역	수검인원(명)
2022	1,990	9,000	11개 시군	7,458
2023	1,990	9,000	18개 시군	8,381
2024	4,300	30,000	50개 시군	18,687
2025	6,500	50,000	150개 시군구	진행 중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제출자료(’25.6.5.)

10)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특수건강검진 10문10답(2024)」(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2) 여성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 제도의 명확화 필요성에 대한 검토

현행법 제11조의3에 따른 “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이 의미하는 바가 명확하지 않아, 현재 시행 중인 여성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의 지속적·안정적인 수행이 어려운 측면¹¹⁾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에게 실시하는 특수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일반건강검진과는 별도의 검진으로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여성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로 보임.

현행 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 규정의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2018년 해당 규정을 도입할 당시 일반건강검진과 구분되는 특별한 건강검진 제도를 신설하려는 취지로 심사됨.

관련 심사자료: 국회회의록(농해수위 소위원회, 2018.11.22.)

-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 여성농어업인에 대해서 좀 특별한 건강검진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여성농어업인에게 특화된 건강검진을 도대체 어떤 항목을 어떻게 또 비용 부담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고.(이하 생략)
- 김종회 위원: ……이 법안에 대해서는 시기상으로 너무 늦었습니다 …… (여성농어업인 특화건강검진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가 진행 중에 있으니까 이걸 무시할 수는 없으나 이런 측면에서는 굳이 연구용역을 할 필요도 없는 부분이라고 봐요.

※ 제20대 국회 제364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 제2차 회의(2018.11.22.) 회의록 16p

11) “복지예산부터 깎는다…첫발 댄 여성 농업인 특수검진, 본사업 시행 불투명”(경향신문, 2022.8.22.)

개정안은 여성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 제도를 법률에 명시하여, 명확한 법률 해석을 통해 당초 의도한 입법취지를 실현하는 것일 뿐, 국가 등에 새로운 의무 또는 추가 재정 소요를 강제하지 않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한편,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건강진단”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개정안의 “특수건강검진”과 용어 및 내용(실시의무자, 목적, 대상, 항목 등)이 다름.

[건강검진(진단) 제도 비교]

구 분	일반건강검진	여성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		특수건강진단
근거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11조의3		「산업안전보건법」제130조
실시 의무	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주
목적	질병의 조기 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	여성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 및 치료		근로자의 건강관리
대상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2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20세 이상인 피부양자	현행법 여성농어업인 (경영주 등 포함됨) 대통령령 농약, 분진, 중량물 반복 취급,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에 노출하는 여성농어업인 *시행규칙 제정하지 않음	개정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 (경영주 등 포함됨)	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고용노동부령 180종 유해인자 *농약, 중량물 반복취급 미포함 ② 건강진단 실시결과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받은 후 작업전환한 이후 의사 소견이 있는 근로자
시행 방법	대통령령 위임 (횟수·절차 등)	대통령령 위임 (시기·항목, 비용 지원 등)		고용노동부령 위임 (시기·주기, 항목·방법 및 비용 등)
검진 주기	(대통령령) 2년 1회 이상 * 비사무직 1년 1회 이상	(대통령령) 2년 1회 이상		(고용노동부령) 유해인자별로 정한 시기 및 주기(3개월, 6개월 등)
검진 항목	(복지부 고시) 신체계측, 혈압측정, 시력·청력 측정 등	(대통령령) ①방사선 촬영, ②골밀도 측정, ③그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목 * 시행규칙 제정하지 않음		(고용노동부령) 유해인자별 상이
비용 부담	(복지부 고시) 공단 전액 부담 *의료급여 수급자 별도	(사업)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사업주 부담
벌칙	-	-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령 재구성

그러나, 다른 입법례에서도 “특수건강진단”이라는 용어를 「산업안전보건법」의 특수건강진단과 별개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충돌소지는 크지 않아 보임.

[특수건강검진 입법례]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특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이하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근로자 2. 제1호, 제3항 및 제131조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결과 직업병 소견이 있는 근로자로 판정받아 작업 전환을 하거나 작업 장소를 변경하여 해당 판정의 원인이 된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제16조(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 ①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건강 보호·유지를 위하여 제10조제2항에 따른 소방전문 의료기관·소방전문치료센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소방공무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8조의2(특수건강진단) ①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건강 보호·유지를 위하여 제8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경찰공무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개정안은 취지를 명확히 반영하기 위해 다음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첫째, 개정안은 “여성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는 현행법이 “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을 여성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건강검진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수검 대상이 좁아지는 것으로 해석될 측면이 있음.

동 표현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제1항제1호¹²⁾의 입법례를 참고한 것으로 보이는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특수건강검진은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하여 실시하는 검진임.

현재 여성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이 일정 연령대의 모든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음을 비추어 볼 때, 개정안은 이러한 사업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둘째,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일반건강검진과 ② 여성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음.

12)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특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후단 생략)

1.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이하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근로자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상 일반건강검진은 국가사무임에도, 개정안에 따라 일반건강검진 제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한다면 행정 현장에 혼동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상기 사항들을 고려하여 「국민건강보험법」상 일반건강검진과 구별되는 “여성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에 대해서만 법적근거를 명확히 표현한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봄.

문 의 처
02)6788-5417

참 고 자 료

참고 1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현황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제출자료('25.6.5.)

- (지원 내용) 근골격계, 심혈관계질환 등 여성농업인이 취약한 질환에 대한 건강검진 및 예방상담 지원

* 건강검진항목(5영역 10항목) :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활량, 농약중독

- (기간) '22년~ 계속

- (대상) 여성농업인(농업경영체등록)

* '25년까지는 51~70세 여성농업인 대상, 2년 주기 검진, 검진률 50% 적용시
검진대상인원 151천명(605천명×½×50%)

- (지원조건·규모) 65억 원(검진비-지자체경상보조, 관리비-민간경상보조)

* 검진비(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55억(22만원/인), 검진관리비(국비100): 10억

- (추진 경과)

- 여성농업인 대상 특수건강검진 도입을 위해 “여성농업인 육성법”(18.12) 및 시행령(19.6월) 개정하는 등 법적 근거 마련
- 농업인 질환, 검진항목 등을 분석하는 연구용역 실시(18.7월~19.3월, 여성농업인 특화 국가건강검진 도입 및 건강관리서비스 확대 방안 연구, 연세대 원주산학협력단)
-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예비검진 조사(1,000명, '19~'20)
- 여성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추진계획 수립('20.5월)
- 사회보장사업 신설 협의(시범사업, '20.6월, 본사업 '22.5월, 복지부)
-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추진방안에 대한 연구실시('20.3월~'21.7월)를 통해 사업 추진 방안 마련

- '22년~'23년 시범사업 시행(9천명 대상, 20억원)
- '23년 8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선정, '24년부터 본사업 수행, '25년 전국 확대 실시

□ (추진 실적)

연도	예산(백만원)	검진대상인원(명)	검진지역	수검인원(명)
2022	1,990	9,000	11개 시군	7,458
2023	1,990	9,000	18개 시군	8,381
2024	4,300	30,000	50개 시군	18,687
2025	6,500	50,000	150개 시군구	

참고 2

「산업안전보건법」 특수건강진단 농어업인 현황

출처: 고용노동부 제출자료('25.6.16.)

(단위: 명)

구분		2023년		2022년	
		농업	어업	농업	어업
합 계		6,092	260	5,365	165
소 음		1,647	1	691	5
이 상 기 압		-	-	-	-
분 진	소 계	1,055	19	1,282	15
	광 물 성	408	15	571	10
	석 면	3	-	2	-
	면	22	-	7	-
	기 타	622	4	702	5
유 기 화 합 물		1,112	160	1,196	77
금 속	소 계	672	21	384	17
	연	62	-	24	-
	수 은	7	2	4	-
	크 롬	155	3	94	3
	카 드 뭉	42	-	12	-
	기 타	406	16	250	14
산·알카리·가스·상물질		489	29	475	23
진 동		255	4	504	2
유 해 광 선		351	4	135	5
야 간 작 업		336	19	399	19
기 타		175	3	299	2

註 : 근로자 수는 연 근로자 수입(주민등록번호, 최초검진일, 유해인자를 기준으로 집계)

※ 본 통계에 활용된 산업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 개정)기준을 적용